# 2023학년도 한성대학교 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 자체평가보고서

2023. 3. 31.





입 학 처

# 【목 차】

I.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 문항	3
Ⅱ. 선행학습 영향평가 진행 절차 및 방법	6
Ⅲ. 고교 교육과정 범위 및 수준 준수 노력	9
IV. 문항 분석 결과	10
♡. 대학 입학전형 반영계획 및 개선 노력	15
· ※ 부록 : 서해화슨 영향평가 받번 · 적차에 대하 대한의 자체규정	 16

#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 문항

### 1.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 목적

- 2014년 9월 12일 제정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과 동법 시행령에는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에서 대학별고사(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 등)를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거나 평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 또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대입전형을 설계·운영해야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해당 법은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학의 준수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특별법이다.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개요

### ■ 공교육정상화법

- 제10조(대학등의 입학전형 등) ① 대학등의 장은 「고등교육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학전형에서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여 서는 아니 된다.
  - ② 대학등의 장은 제1항의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 대학등의 장은 제2항의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해당 대학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 공교육정상화법시행령

- 제5조(대학등의 입학전형 영향평가) ①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등(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제34조의5에 따른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대학등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대학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 2. 선행학습 영향평가 세부내용

- (1)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 기관 및 범위
  - 대상 : 대학별고사를 시행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경찰대학, 과학기술원, 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 등 모든 고등교육기관
  - 범위: 대학에서 시행하는 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 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 등. ※ 단, 실기고사(예·체능)는 제외
- (2) 선행학습 영향평가 시행 및 결과 반영
  - 대학별고사를 시행하는 대학은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위한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학교규칙으로 정하고, 반드시 자체적으로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함.
  - 선행학습 영향평가의 시행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 반영계획은 매년 3월 31일까지 대학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해야 함.

#### (3) 선행학습 영향평가 불이행에 대한 행정처분(제15조 관련)

# 법 제10조의 입학전형 및 입학전형 영향평가 관련 사항을 위반한 경우 1) 대학 등이 고등교육법령에 따른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 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 총 입학정원의 성.인성검사를 말한다)를 실시할 때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 1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한 경우 2) 대학 등이 입학전형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그 결 총 입학정원의 5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3) 입학전형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 총 입학정원의 영 계획을 해당 대학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 5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개하지 않은 경우

### 3.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 문항 총괄표

									계일	열 및 교	.과				
대학별	지원대	입학모집요강에 계열 제시한 자격 기준 과목명			하위		인문사회				과	학			교
고사 전 유형	전형명		번호	문항 번호	국어	사회	도덕	수학	물리	화학	생명 지구 기 과학 과학		기타	과 외	
논술 등 필답고사		해당없음 (논술 등 필답고사 미실시)													
면접 <sup>.</sup> 구술고사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									인성 면접					

○ 본교 2023학년도 수시·정시 신입학 전형의 경우,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으로는 재외국민 특별전형만 해당하며, 그 외 논술고사, 문제 출제형 면접·구술고사에 해당하는 전형 자체가 없다. 상기 면접을 실시하는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경우, 해외수학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험생의 부담 경감을 위해 교과 지식을 확인하는 사항 및 학교생활기록부 자체를 전형자료로 활용하지 않으며, 단순 지원동기 및 입학 후 학업계획 등을 묻는 인성면접(5분 소요)만 실시하였다.

# **II** 선행학습 영향평가 진행 절차 및 방법

### 1. 대학별 고사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이행 사항 점검 체크리스트

78	판단기준								
구분	항목	세부내용	이행 점검						
	1. 관련 자료의 홈페이지 게시	① 기간 내 선행학습 영향평가 자체평가보고서 공개 (문항과 답안 공개의 충실성)	O (이행)						
내약별 고사 시행 관련 이행 사항 점검 3. 선		② 문항 총괄표 작성의 충실성							
	2.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항목 준수	③ 문항 제출 양식(문항카드) 작성의 충실성	- (해당사항 없음)						
		④ 장별 내용 제시 여부							
	3. 선행학습 영향평가 위원회 구성	⑤ 위원회의 외부위원 포함 여부	O (이행)						
		⑥ 현직 고등학교 교사 포함 여부	O (이행)						

### 2.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대한 대학의 자체 규정

- 본교는 2014년 12월경「대학입학전형 자체영향평가 시행세칙」을 규정하여, 선행 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제반 규정을 마련하였다.
- 「대학입학전형 자체영향평가에 관한 규정」 <부록 1> 참조

### 3. 선행학습 영향평가위원회 역할 및 조직

- 본교는 「자체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입학처에서 기획·운영하는 모든 대학별 고사에 대하여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다음 입학전형에 반영토록 한다.
- 대학별 고사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준수 여부 검토, 개선방안 마련 등 자체적인 모니터링 및 차년도 입학전형 계획에 반영하는 역할을 실시한다.
- 자체영향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포함 7명의 위원 중 3명을 외부위원으로 위촉(43%)하였다. 또한 외부위원 3명을 현직 일반계 고등학교 교사로 구성하였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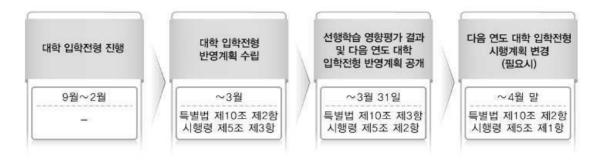
며, 각 수학 및 국어 전문교과 교사로 편성하였다. 이를 통해 교사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본교 대학별고사에 대한 의견 역시 수렴하도록 되어있다.

○ 한성대학교 대학입학전형 자체영향평가위원회 구성

구분	소속(위촉)	성명	직위	비고
위원장	한성대학교	김ㅇㅇ	입학처장	
	한성대학교	김ㅇㅇ	대학입학공정관리위원장	내부위원
	한성대학교	오ㅇㅇ	입학전형개발센터 부센터장	(57%)
	한성대학교	김ㅇㅇ	입학전형개발센터 부팀장	
위원	교육전문가	0 00	퇴직 교장	
	○○고등학교 (일반고)	0 00	현직 교사	외부위원 (43%)
	○○고등학교 (일반고)	신ㅇㅇ	현직 교사	

### 4. 2023학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일정 및 절차

### ○ 진행절차



### ○ 진행일정

- 1) 자체평가 보고서 내부·외부 위원 위촉 : ~2023. 2. 20.
- 2) 자체평가 보고서 내부·외부 위원 사전 회의 : 2023. 2. 22.
- 3) 자체평가 보고서 내부위원 작성: ~2023. 3. 15.
- 4) 자체평가 보고서 외부위원 작성: ~2023. 3. 17.
- 5) 자체평가 보고서 서면검토 : ~2023. 3. 25.
- 6) 자체평가 보고서 최종보고 및 공지: ~2023. 3. 31

# Ⅲ 고교 교육과정 범위 및 수준 준수 노력

- 1. 별도의 자체고사 출제: "해당사항 없음"
- 2. 기타 고교교육 기여를 위한 자체적 노력
  - 논술 및 적성고사 미실시 기조 유지

우리대학은 수험생 및 학부모의 대입부담 완화와 고교교육에 기여하고자 사교육 및 선행학습의 유발 가능성이 높은 논술 및 적성고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 인성 중심의 개별면접 실시

면접고사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에 한하며 교과형 구술면접이 아니며, 해외에서 수학하였다는 특이점을 고려하여 학교생활기록부를 전형자료로 활용하지 않고 단순 인성중심의 개별 면접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다.

- 예술계열학과에 한해 실기고사 실시

실기고사의 경우 예술학부 및 ICT디자인학부에 한해 사전 모집요강에 안내한 내용에 따라 실기고사를 실시하고 있다.

- 고교대학 협의체를 통한 상시적인 자문체계 구축

본교 고등학교 교사자문단 회의를 통해 변화하는 고교 교육과정 및 대입전형 개선을 위한 상시적인 자문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 매년 대입전형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

매년 일반고 교사를 포함한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고사 전반에 대한 선행학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 ₩ 문항 분석 결과

1. 문항 분석 결과 요약표

평가대상	입학전형	계열	문항 번호	하위 문항 번호	교과별 교육과정 과목명	교육과정 준수 여부	문항 붙임 번호			
논술 등 필답고사		"해당사항 없음" (논술 등 필답고사 미실시)								
면접 구술고사	재외국민 특별전형	"해당사항 없음" (인성 5분 면접)								

- 2.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 면접고사 설명
- 1)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 소개

구 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일반 재외국민	일반 재외국민 29명		29명	
재외국민 특별전형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모집인원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모집인원	
	북한이탈주민	제한없음	북한이탈주민	제한없음	
합계(명)		29명+@명		29명+@명	

- (1) 일반 재외국민 지원자격: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해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 (2)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지원자격: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 (초·중·고)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 및 결혼이주민 /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 12년
- (3) 북한이탈주민 지원자격: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검정고시출신자 가능

### 2)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 선발방법

구 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전체 전형 인성면접고사 100%	좌동

선발단계	선발비율	=	구분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인성면접고사		
단일 100% 단일 모집단위별 전형 선발대상자	반양	경비율	100%	100%	
	반영	최고점	1,000점	1,000점	
	언글대당시	점수	최저점	0점	-

### 3)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 인성면접고사 원칙

- 본교 면접고사는 구술 심층 면접이나 문제풀이식 면접이 아닌 학생의 인성과 기초소양(표현력과 태도) 등을 면접 질문으로 활용하는 일반면접을 원칙으로 한 다.
- 특히, 사전 제출 서류 없이, 고사 당일 작성하는 [면접기초자료서]를 기반으로 면접을 진행하며 면접의 유형도 수험생 1인당 5분 이내의 질의응답 형태로 제출 서류 내용 확인 면접으로 진행한다.
- 면접문항은 [면접기초자료서] 내에서 개별 맞춤형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작성 평가 내용의 검증 및 인성·기초소양 등을 평가하는 면접고사로 진행한다.
- 면접위원은 자기소개서 'O점 처리' 사항(공인어학성적, 교과 관련 교외수상실적 등)을 기재한 수험생에 대해 해당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는다.
- 면접위원의 질문 내용과 무관하게 수험생이 상기 사항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는 경우, 그 내용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 4)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 인성면접고사 자료(면접기초자료서)

	면접고사	당일	20분	내	수험생	자필작성(A4	규격	1장	이내)	)
--	------	----	-----	---	-----	---------	----	----	-----	---

면접기초자료서 모집단위 가번호 1. 지원동기(motive to apply)

2. 학업계획(study plan)

3. 특별활동, 특기사항(extracurricular activities, special ability)

# 5)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 인성면접고사 질문(예시)

- 지원자가 제출한 [면접기초자료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지원자의 주요 활동과 과정 중심의 면접평가를 실시한다. 그 외의 사항은 질의할 수 없으며, 평가에 반영할 수 없다.
- 또한,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 특성상 한국어가 다소 미숙하거나 [면접기초자료서] 작성내용이 부실할 수 있으나. 평가의 감점사유는 안 된다.

#### 면접고사 예시문항

- **예1)** ○○○○ 모집단위에 지원하셨습니다. 해당 모집단위에 지원하게 된 동기 및 주요활 동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 예2) □□□□□ 학업계획을 작성하셨습니다. 해당 학업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세요. ■■■ 계획을 언급했는데, 그 ■■■을 고교 시절에 실천한 경험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 **예3)** 고등학교 ◇◇◇를 장시간 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보세요, 그리고 해당 활동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역량이 발전되었는지 설명해보세요.
- **예4)** 고등학교 2학년 독서활동으로 ◉◉◉ 책을 읽었다고 작성했는데, 지원학과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설명해보세요.
- 예5) 학급 임원을 3년간 지속적으로 실천했다고 작성했는데, 학우들과 협력하는데 있어서 어려웠던 점은 없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3.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 인성면접고사에 대한 외부위원 검토의견서

- 선행학습 검토 위원에게 인성면접 문항의 검토의견을 전송할 때 문항 및 자료검증 차원에서 개별 모집단위별 실제 면접기초자료서 일부를 제공하였다. 면접 질문문 항만으로 인성면접인 것을 검증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부분적으로 공개하였다.
- 또한, 검토의견서는 외부위원(일반고등학교 교사) 3명의 검토회신서 내용을 그대로 보고서 해당 영역에 담았으며. 내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지 않았다.

## 1) A외부위원

#### 검토 의견

- 1.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면접 전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원 자격을 심사하는 일이라고 본다. 해외 교육과정과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의 상이한 부분을 아포스티유 인증이 되어 있는 서류에 대해 공문서로 인정하는 협약을 통해 확인하는 등 꼼꼼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 2. 일부 입시 준비를 잘 시키는 재외 국제학교들이 있어 준비가 되지 않은 학생들과 면접 기초자료서 작성에서부터 차이가 날 수 있다. 면접기초자료서가 점수화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작성한 부분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 3. 면접 자체가 '면접기초자료서' 내용을 근거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험생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전반적인 학교생활과 학업의 내용을 토대로 대학에서 수학할 능력이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으며 특히 고교의 경우에서도 해외 특례 전 편입학 학생들이 학교생활 적응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 인성을 확인하는 면접이 중요한 데 면접의 내용이 학교에서 생활하고 학습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정도의 인성 면접으로 생각되며, 면접 문항역시 학교 교육 외의 사항을 체크 하거나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수험생의 진로 탐색이나인성, 사회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문제시되지 않는다고 본다. 면접기초자료서

문항 자체의 난이도도 쉬워 학생들이 별도 사교육의 도움 없이 준비할 수 있다고 판단된 다.

### 2) B외부위원

### 검토 의견

- 1. 재외국민 특별전형 수험생의 특성상 미래 발전가능성을 점검하는 면접기초자료서라고 판단된다. 지원동기, 학업계획, 특별(과외)활동 등의 사항은 외국고교, 국제학교 또는 재외한국학교 상관없이 일반적인 질문사항이므로 부담없이 대답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2. 인성 질문에 대한 면접문항이 모두 면접기초자료서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되며,수험생이 작성한 학교에서 생활하고 학습한 내용의 사실여부를 판단하는 정도로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 범위로 판단됩니다.
- 3. 재외한국학교에서 입시지도를 해 본 경험으로 볼 때, 외국에서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청소년기를 보낸 학생들은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을 받은 학생들보다 훨씬 생각이 유연하고 자유로우며 진취적인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것을 면접을 통해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 범위의 면접문항이라고 판단됩니다.
- 4. 자기소개서에서 언급한 해외 경험이 어떤 점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며 장점인지를 말해보게 한다든지, 특별히 인상적이었던 사건이나 경험을 물어보는 것도 재외국민 특별 전형에서 필요한 면접문항이라고 판단됩니다.

### 3) C외부위원

### 검토 의견

- 1. 질문 내용이 지원동기, 학업계획, 특별활동, 특기사항 등 모두 선행학습과 무관한 일반 적인 내용들이고 면접기초자료를 미리 작성하게 하여 충분히 자신을 소개할 시간과 기회 가 제공되었다고 생각됨.
- 2. 면접자의 인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질문도 있고 개인별 학습 과정과 성취를 묻는 심층질문이 아닌 잠재력과 사회성과 인성을 엿볼 수 있는 질문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됨.
- 3. 질문 내용이 수험생에겐 부담이 적지만 답변은 개별적으로 모두 다를 수 있다는 장점과 면접자료에 적은 내용의 진실성도 살필 수 있어 모집 학과의 특성에 맞는 학생을 선발할 수 있게 되어 있음.
- 4. 따라서 재외국민 특별전형 면접내용은 수험생의 진로 탐색과 인성 사회성 교육에 긍정적 요인으로 영향을 미치고 선행학습이 필요 없는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충분 하므로 교육과정 정상화에도 부합된다고 생각됨.

# V

# 대학 입학전형 반영계획 및 개선 노력

-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사교육의 유발가능성이 크다고 인식되는 논술 및 적성 고사에 대한 미실시 기조를 유지하였다.
- 선행학습 검토위원 분석결과 면접고사는 구술 심층 면접이나 문제 풀이식 면접 이 아닌 단순 면접기초자료서를 기반으로 면접질문으로 활용하는 인성면접으로 진행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 2023학년도의 경우 수험생들의 전형준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사방식을 동일하게 운영하였으며, 면접의 형태도 수험생 1인 기준 5분 이내의 질의응답형태로 실시하였다.
- 종합적으로 본교는 2023학년도 신입생 선발을 위한 대학별고사(인성면접)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및 수준 내에서 이행하였다. 추후 2024학년도 대학별 고사에서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잣대를 준수하며,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대학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한다.
- 더불어 향후 대입전형 운영에도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대학별 고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현장과의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위해 지속 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 【 부록 】

○ 선행학습 영향평가 방법·절차에 대한 대학의 자체규정

#### - 대학입학전형 자체영향평가 시행세칙[3-1-56] -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제10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본 대학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규정 제10조에 의거, 자체영향평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자체영향평가의 정의) "자체영향평가"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에서 대학별 고사 (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점검·분석·영향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 3조 (자체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제2조에 따른 본교의 대학별 고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는지 여부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인은 없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입학처장 위원장으로 하고 자체영향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부위원은 6명 이내, 외부위원은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 ③ 내부위원은 입학처장,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장, 입학전형개발센터 부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전임교원 및 교내 전문가를, 외부위원은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자중에서 입학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 1. 대학별 고사의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 여부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 2. 자체영향평가의 평가영역, 내용, 방법 및 진행절차에 관한 사항
- 3. 자체영향평가 결과의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에 관한 사항
- 4. 선행교육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 5. 평가결과에 따른 대학별 고사의 개선에 관한 사항
- 6. 기타 자체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⑥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입학전형개발센터 부센터장이 된다.

제 4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 5조 (수당 등 지급) ①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체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게 조사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6조 (영향평가의 시기 및 반영) ① 자체영향평가는 해당 대학별고사가 종료된 이후에 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모집시기(수시 및 정시)별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자체영향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 7조 (결과의 공시)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본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한다.

제 8조 (기타) 자체영향평가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시 행 일) 본 개정 규정은 2014년 12월 19일 부터 시행한다.

